

외부감사인과 지배기구간 커뮤니케이션 빈도와 감사품질과의 관련성

김종근* · 김갑순**

〈요 약〉

외부감사인과 지배기구인 감사위원회(감사)간의 커뮤니케이션은 최근 감독당국이 동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외부공시를 강화하고, 핵심감사제도가 전 상장회사에 도입됨에 따라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회계감사기준에서는 외부감사인이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을 할 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며, 외부감사인과 감사위원회(감사)간의 커뮤니케이션은 감사품질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감사절차 중에 하나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4년부터 외부감사인이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빈도가 감사보고서의 첨부문서에 공시됨에 따라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비금융 회사를 대상으로 외부감사인과 지배기구간의 커뮤니케이션 빈도와 감사품질과의 관련성을 연구하였다. 감사품질로는 수정 Jones 모형(1995)과 수정 Jones 모형에 경영성과를 반영한 모형인 Kothari et al.(2005)모형을 사용하여 측정된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하였다.

실증결과, 관심변수인 커뮤니케이션 빈도가 두 가지 모형으로 측정한 감사품질 모두와 유의한 양(+)의 관계로 나타났으며, 외부감사인과 지배기구간 커뮤니케이션 빈도와 감사품질간의 관련성을 감사위원회가 강화하는지를 교차변수를 도입하여 검증한 결과에서는 유의한 결과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실증결과는 외부감사인과 지배기구인 감사위원회(감사)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며, 커뮤니케이션 빈도가 증가할수록 감사품질이 향상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본 연구는 외부감사인과 지배기구간 커뮤니케이션 질이 아닌 외형적인 커뮤니케이션 빈도만을 고려한 연구라는 한계점이 있지만, 외부감사인과 지배기구인 감사위원회(감사)간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하고 활성화되도록 공시를 확대하는 등 감독당국의 정책방향이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주제어〉 외부감사인의 커뮤니케이션, 감사품질, 감사위원회

* 동국대학교-서울 대학원 회계학과 박사과정, jjgkimfss@gmail.com, 주저자

** 동국대학교-서울 경영대학 회계학과 교수, kks@dongguk.edu, 교신저자

I. 서 론

1988년 설립된 아시아나 항공은 2019년 3월 21일 설립이후 처음으로 2018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감사범위 제한의 사유로 한정 의견¹⁾을 받아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되면서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다. 외부감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은 리스 항공기의 정비 비용을 매년 나눠 충당 부채로 잡지 않는 등의 사유로 한정 의견을 표명하였다. 나흘 후인 2019년 3월 26일 아시아나 항공이 삼일회계법인의 회계처리 지적사항을 수용²⁾하면서 최종 감사의견을 적정 의견을 받아 일단락되었다. 2017년 10월 31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주기적 지정제도 도입, 분식회계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이 시행됨에 따라 향후 감사인 교체가 예상됨에 따라 외부감사인은 보다 엄격한 외부감사가 진행할 것이며, 아시아나항공과 유사하게 회계이슈에 대한 기업과 외부감사인의 갈등이 증가하고 비적정 의견 표명도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되었다. 외부감사인은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외부감사과정에서 발견된 유의적인 사항 등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을 하여야 하므로 외부감사인과 회사는 감사과정에서 이미 논란이 되는 회계이슈에 대하여 인지할 수 있으나, 이에 비해 투자자 등 외부 이해관계자는 감사보고서 발행시점에 이를 알게 됨에 따라 시장충격이 더 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2019년 4월 금융당국은 회계개혁의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하여 향후 1년간 ‘회계개혁 정착지원단’을 운영하면서 시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하여 여러 조치 중 하나로 기업과 외부감사인, 투자자간의 의사소통을 활성화할 필요성을 언급하였으며, “감사의견이 기업과 외부감사인간에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거쳐 결정될 수 있도록 회계법인의 연중 상시감사 시스템을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 후속 조치로 2020년 1월 29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연중상시 감사를 유도하기 위하여 재무제표 중 이해관계자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지배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논의한 내용³⁾을 사업보고서뿐만 아니라 분·반기 보고서에서도

-
- 1) 아시아나 항공은 2019년 3월 21일 한국거래소의 감사의견 비적정 의견설에 조회공시요구를 받고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 의견을 받았다고 2019년 3월 22일 공시하였다.
 - 2) 2019년 3월 22일 연합뉴스 보도(아시아나항공, 감사의견 ‘한정’ ... “충당부채 등 자료 이견”)에 따르면 한정 의견을 받은 사유로 운용리스 항공기 반납정비 충당금, 마일리지 충당금 추가 반영, 관계사 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등이라고 보도하였으며, 2019년 3월 26일 한국경제 보도(‘회계쇼크’ 벗은 아시아나... 감사의견 ‘적정’으로 전환)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외부감사인의 지적사항을 수용하였다고 보도하였다.
 - 3) 금융감독원은 2020년 1월 30일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개정하여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논의한 결과와 관련하여 일자, 참석자, 방식, 주요 논의내용에 대한 공시서식을 마련하였으며, 주요 논의내용의 예시로는 다음을 제시하였다.
 - 가. 검토 또는 감사 보수, 시간 및 필요한 인력에 관한 논의
 - 나. 계획된 검토 또는 감사 범위 및 시기에 대한 논의
 - 다. 부정위험과 관련하여 지배기구 감시기능에 대한 논의

신속하고 충실하게 공시하여 투자자 등도 적시에 알 수 있도록 하였다.

회계감사기준에서 외부감사인에게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을 하도록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회계감사기준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을 할 상대방인 지배기구를 ‘기업의 전략방향 및 기업의 수탁책임과 관련된 의무를 감시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나 조직이며, 이러한 책임에는 재무보고절차에 대한 감시가 포함 된다’고 정의하고 있을 뿐 국가나 기업에 따라 지배구조는 다양함에 따라 커뮤니케이션 대상을 구체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2018-2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회계감사실무지침’에서 외부감사인이 커뮤니케이션을 할 지배기구는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⁴⁾라고 하였다.

감사위원회(감사)는 상법과 외부감사법에 따라 재무제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업무, 이사회와 직무감사 등을 통해 고품질의 재무보고가 가능하도록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2018년 6월 20일 제정공표한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에서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최소한 분기 1회 이상의 주기적인 의사소통을 권고하고 있으며, 회계감사기준에서 감사계약단계에서부터 감사종료단계까지 회계감사 전 과정에 걸쳐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을 하도록 외부감사인에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감사위원회(감사)와 외부감사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감사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아주 중요하며 실질적인 절차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외부감사인과 지배기구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외부감사 실시내용’에서 공시되고 있는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빈도와 감사품질과의 관계를 살펴보았으며, 상장회사는 상법상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를 설치하여야 하며, 감사와 달리 감사위원회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인 감사위원을 1인 이상 두어야 하므로 외부감사과정에서 더 적극적으로 관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기업에서 외부감사인과 지배기구간 커뮤니케이션 빈도와 감사품질간의 관계가 강화되는지도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외부감사인과 지배기구인 감사위원회(감사)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려는 감독당국의 정책방향이 타당한지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고, 정책의 효과성을 가늠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I 장 서론에 이어, 제 II 장에서는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해 가설을 설정하였으며, 제 III 장에서는 연구모형을 설계하고 변수의 정의 및 측정, 표본기업의 선정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제 IV 장에서는 실증분석결과를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제 V 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한계점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라. 검토 또는 감사에서의 유의적인 발견된 사항에 대한 논의

마. 유의적 내부통제 미비점 관련 논의

바. 검토 또는 감사시 미수정왜곡표시 및 후속사건 관련 논의

사. 검토 또는 감사의견의 변형 가능성 관련 논의 등

4) 만약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감시기능이 효과적이지 않거나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회를 커뮤니케이션할 적합한 대상으로 보고 있다.

II. 선행연구 및 가설의 설정

1. 외부감사인과 지배기구간 커뮤니케이션

외부감사인과 지배기구인 감사위원회(감사)간의 커뮤니케이션은 양측 모두에게 필요성이 있다. 감사위원 또는 감사는 외부감사인의 관련 사업에 대한 감사경험, 감사계획, 감사수행 등을 통해 해당 회사의 회계리스크를 파악할 수 있으며, 외부감사인도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외부감사인의 가치를 인정받고 계속감사수임 등의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다.

최근 외부감사법이 2017년 10월 31일에 전면 개정되면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해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첫째, 외부감사인의 선임주체가 기존 회사의 경영진으로부터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로 선임권이 이전됨에 따라 커뮤니케이션을 중요성과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외부감사법에서는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기 이전에 감사시간, 감사인력, 감사보수 및 감사계획의 적정성, 외부감사인인 전문성 및 독립성 등을 포함한 감사인 선정기준을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감사보고서 제출받은 이후 외부감사인 선정기준 등에서 정한 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하였는지 여부 등 외부감사인을 평가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평가결과를 후임 외부감사인 선임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2014년 5월 28일 외부감사법 개정되었는데, 회계제도의 투명성과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감사 실시내용을 감사보고서에 첨부하여 공시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최근 외부감사 실시내용 중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정보에 대한 공시범위가 확대되었다. 기존의 빈도나 개최시기 정보에서 2018 사업연도부터 참석자, 대면회의 여부, 주요논의내용 등으로 공시범위가 확대되었다.

셋째, 대우조선해양 등 대규모 분식회계로 인해 수주산업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6년 6월부터 수주산업에서 핵심감사제를 도입되었고, 2017년 12월 20일 회계감사기준이 개정되어 핵심감사제가 확대되었다. 2018년 감사보고서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확대 도입되어 2020년 감사보고서부터는 전 상장회사에 핵심감사제가 도입된다. 핵심감사사항은 외부감사인이 지배기구 즉, 감사위원회와 감사와의 협의를 통해 선정하고 감사보고서에 선정이유, 수행한 절차 및 그 결과를 기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의 변화로 인해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다양한 회계감사기준서에서 요구하는 커뮤니케이션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외부감사인과 지배기구간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할 목

5) 감사참여자 구분별 인원수 및 감사시간, 감사단계별(전반감사계획, 현장감사 주요내용, 재고자산실사, 금융자산실사, 외부조회,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 외부전문가 활용) 주요 감사실시내용을 감사보고서에 첨부하여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적으로 회계감사 실무지침 2018-2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회계감사실무지침’을 마련하였다.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발표한 실무지침의 주요내용을 감사단계별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외부감사인인 감사계약 단계부터 감사계획, 감사수행, 감사종료단계에서 지속적으로 지배기구인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와 커뮤니케이션을 하여야 하며, 특히 핵심감사사항 결정, 고위 경영진이 연루된 회계부정, 감사진행 중 발견되거나 경영진과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유의적인 사항에 대한 논의는 감사품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활동으로 파악된다.

<표 1>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회계감사실무지침 주요내용⁶⁾

구분	주요 내용
감사계약	• 감사보수,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 • 재무제표 감사와 관련된 감사인의 책임
감사계획	• 커뮤니케이션의 형태, 시기 및 예상되는 일반적 내용 • 계획된 감사범위와 시기의 개요 • 부정 위험과 관련하여 지배기구가 수행하는 감시 기능의 이해 •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질의
감사수행	• 감사에서의 유의적 발견사항 • 경영진이 연루된 부정 등 부정 관련 사항 • 식별되었거나 의심되는 법규 위반 • 유의적 내부통제 미비점 •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다고 식별된 사건 또는 상황 • 감사인이 핵심감사사항이라고 결정한 사항들 또는 핵심감사사항이 없다고 결정한 내용
감사종료	• 상장기업의 경우, 독립성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다는 진술 • 후속사건 • 감사의견을 변형시킬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 감사보고서에 강조사항문단이나 기타사항문단을 포함시킬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 감사보고서에 업무수행이사의 이름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 감사 받은 재무제표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 내의 기타정보의 수정이 필요하나 경영진이 그러한 수정을 거부하는 경우

6)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회계감사실무지침 2018-2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회계감사실무지침’중 관련 내용을 발췌하였다.

2. 선행연구 및 가설설정

외부감사인과 지배기구간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실증연구는 아직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선행연구는 주로 실증연구보다는 설문조사나 실험을 통해 진행되었다. DeAngelo(1981)은 내부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외부감사인이 경영진의 압력에 맞서 중요한 회계오류를 발견하고 보고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위해 외부감사인의 품질을 모니터링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Read and Raghunandan(2001)는 미국의 상장된 대형 제조업체 123개 회사의 내부통제책임자(Chief internal auditors)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위원들로 구성된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과 경영진 등과 효과적으로 상호 소통할 경우 재무보고의 질이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 Fiolleau et al.(2019)에 따르면 정책당국에서는 외부감사인과 감사위원회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감사품질의 하나의 지표로 인식하고 있으며, 외부감사인이 감사위원회와 무엇을 커뮤니케이션을 할지 결정할 때 고려되는 요소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미국과 캐나다 소재 5대 회계법인에 근무하는 매니저 및 파트너 53인을 대상으로 인터뷰한 결과 감사위원회는 회계이슈에 대한 해결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기보다는 한발 물러서는 것을 선호하고, 많은 감사위원회는 경영진과 외부감사인이 해결한 회계이슈에 대한 통찰력도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커뮤니케이션 빈도를 이용하여 실증한 선행연구는 외부감사인과 지배기구간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연구분야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활동성에 대한 연구에서 많이 진행되었다. Beasley et al.(2000)는 회계오류가 있는 기업의 감사위원회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감사위원회 개최횟수가 작다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Xie et al.(2003)는 감사위원회 개최횟수는 재량적 발생액과 음(-)의 관계에 있으며, 이는 경영진이 이익조정을 하려는 경향을 억제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국내연구로는 손성규 등(2004)은 감사위원회의 활동성 대응치로 연간 감사위원회 개최횟수의 자연로그 값을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 회계오류의 발견 및 보고와 활동성은 유의적인 음(-)의 관계로 나타났다.

따라서 2014년부터 국내에서 감사보고서 첨부문서로 외부감사 실시내용 중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빈도를 공시하고 있으므로 외부감사인과 지배기구간의 커뮤니케이션 빈도가 감사품질과 관련성이 있는지를 실증하고자 한다.

가설 1 : 외부감사인과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빈도와 감사품질 간에는 양(+)의 관련성이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발표한 회계감사 실무지침 2018-2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회계감사실무지침’에 따르면 외부감사인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상대방은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이다. 상법상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를 의무 설치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의 경우

7)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를, 1천억원 이상부터 2조원 미

3인 이상으로 감사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감사위원 중 최소한 1인 이상은 회계전문가 또는 재무전문가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반해 감사의 경우 전문가를 두도록 요구하지 않고 있다. Xie et al.(2003)은 감사위원회, 이사회 등에 기업 및 재무경력을 가진 이사가 많을수록 이익조정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edard et al.(2004)는 감사위원 중 재무전문가가 있는 경우 이익조정 수준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따라서 외부감사인이 외부감사 과정에서 발견한 회계이슈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일반적으로 전문가를 보유한 감사위원회가 그렇지 않는 감사보다 회계이슈 해결과정에서 더 적극적으로 관여하려고 할 것이다. 이에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2 : 외부감사인과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빈도와 감사품질 간의 양(+)의 관련성은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기업이 설치하지 않은 기업보다 크다.

III. 연구설계 및 표본설정

1. 감사품질의 측정

감사품질에 대한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감사품질의 대용치로 재량적 발생액을 사용하고 있다 (최관 · 박종일, 2012 ; 김선미 · 유승원, 2010 ; 이승현 등, 2019). 본 연구에서도 감사품질 대용치로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하였고, 수정 Jones 모형(Dechow 외 1995)과 성과통제모형(Kothari 외 2005)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다음 두 가지 회귀모형은 산업별 · 연도별로 추정하여 계수 값을 추정하였으며, 추정된 계수를 수정 Jones 모형과 성과통제 모형에 각각 대입하여 계산된 잔차(ϵ)를 이익조정의 대용치인 재량적 발생액으로 사용하였다.

수정 Jones 모형 :

$$TA_t/A_{t-1} = \beta_1(1/A_{t-1}) + \beta_2[(\Delta REV_t - \Delta REC_t)/A_{t-1}] + \beta_3(PPE_t/A_{t-1}) + \epsilon_t$$

성과통제모형 :

$$TA_t/A_{t-1} = \beta_1(1/A_{t-1}) + \beta_2[(\Delta REV_t - \Delta REC_t)/A_{t-1}] + \beta_3(PPE_t/A_{t-1}) + \beta_4(ROA_t) + \epsilon_t$$

여기에서,

TA_t : 총발생액(당기순이익 - 영업활동현금흐름)

A_{t-1} : 기초총자산(t-1기)

ΔREV_t : 매출액 증가액(t기)

만인 상장회사는 상근감사를, 1천억원 미만인 상장회사는 감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조원 미만인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 가능하며, 1천억원 미만인 경우 상근감사를 둘 수 있다.

ΔREC_t : 매출채권 증가액(t기)
 PPE_t : 유형자산(토지, 건설 중인 자산 제외)(t기)
 ROA_t : 기초자산대비 당기순이익(t기)
 ϵ_t : 잔차항

2. 연구모형의 설정

본 연구는 외부감사인과 지배기구간 커뮤니케이션과 감사품질의 관련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 식과 같이 종속변수는 감사품질 대용치인 재량적 발생액이며, 독립변수는 커뮤니케이션 빈도이다. 통제변수로는 선행연구에서 재량적 발생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변수들을 사용하였다(전규안 등, 2004 ; 고대영 등, 2007 ; 전영순 등, 2013 ; 최현섭 · 정래용, 2017).

<모형1>

$$AQ = \alpha + \beta_1 Comm + \beta_2 size + \beta_3 cfo + \beta_4 growth + \beta_5 lev + \beta_6 big4 + \beta_7 loss + \beta_8 own + \beta_9 for + \beta_{10} ta + \sum \text{산업더미} + \sum \text{연도더미} + \epsilon$$

<모형2>

$$AQ = \alpha + \beta_1 Comm + \beta_2 AC + \beta_3 Comm \times AC + \beta_4 size + \beta_5 cfo + \beta_6 growth + \beta_7 lev + \beta_8 big4 + \beta_9 loss + \beta_{10} own + \beta_{11} for + \beta_{12} ta + \sum \text{산업더미} + \sum \text{연도더미} + \epsilon$$

여기에서,

—AQ(감사품질)

mjda1 : 수정 Jones모형을 이용한 재량적 발생액

mjda1_roa : ROA 성과통제모형(Kothari et al. 2005)을 이용한 재량적 발생액

—Comm : 해당기업의 감사보고서에 첨부되어 공시된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 빈도

—AC : 해당기업이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1, 그렇지 않는 경우 0

—size : 총자산의 자연로그를 취한 값

—cfo : t기 영업현금흐름을 (t-1)기 자산총액으로 나눈 값

—growth : t기 매출액을 (t-1)기 매출액으로 나눈 값

—lev : 총부채를 총자산으로 나눈 값

—big4 : 해당회사 외부감사인이 Big4인 경우 1, 그렇지 않으면 0

—loss : (t-1)기 당기순이익이 음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own : 최대주주 지분율의 자연로그 값

—for : 외국인의 지분율의 자연로그 값

—ta : (t-1)기 총발생액을 기초 총자산으로 나눈 값

—산업더미 : 기업이 해당산업에 소속된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

—연도더미 : 해당연도이면 1, 그렇지 않은 경우 0

본 연구의 <모형1>에서 관심변수는 커뮤니케이션 빈도(Comm)이다. 커뮤니케이션 빈도가 증가할수록 감사품질이 증가한다면 동 변수의 계수 값은 채량적 발생액과 유의한 양(+)의 관계⁸⁾로 나타날 것이다.

<모형2>는 커뮤니케이션 빈도와 감사품질간의 관련성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모형으로 커뮤니케이션 빈도(Comm)와 감사위원회 여부(AC)의 교차 항이 채량적 발생액과 유의한 음(-)의 관계가 예상되며, 이 경우 감사위원회가 커뮤니케이션 빈도와 감사품질간의 관련성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통제변수들을 살펴보면 먼저 기업규모(size)가 클수록 이해관계자가 많으므로 채량적 발생액이 감소한다는 주장(최현섭 등 2016)과 기업규모가 클수록 외부에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경영자의 채량적 발생액이 증가한다는 주장(Xie et al. 2003)이 혼재되어 있어 계수 값의 부호를 예상하지 않았다. 영업현금흐름(cfo)이 높을수록 경영자의 채량적 발생액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영업현금흐름(cfo)와 채량적 발생액 사이에는 음(-)의 관계가 예상되며, 성장성(Growth)의 경우 성장률이 높을 경우 경영자의 채량적 발생액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양(+)의 관계를 예상하였다. 또한 부채비율(Lev)의 경우 부채가 많을수록 부채계약을 준수하기 위해 이익조정동기가 커질 것이라는 주장(최현섭 등 2016)과 채권자들의 기업 감시가 강화되면 채량적 발생액이 낮아질 수 있다는 주장(맹수호 등, 2015)이 혼재되어 있다. 또한 외부감사인의 대형회계법인 여부, 손실여부, 대주주지분율, 외국인지분율도 경영자의 채량적 발생액을 통제하기 위해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산업과 연도별로 기업의 채량적 발생액을 통제하기 위하여 산업더미와 연도더미를 추가하였다.

3. 표본의 선정

2014년 5월 28일 회계제도의 투명성과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부감사법이 개정되었으며, 그 결과로 외부감사인과 지배기구간의 커뮤니케이션 빈도에 대한 정보도 공시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비금융회사 중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상장회사를 표본으로 하였다. 한국신용평가정보(주)의 KIS-VALUE에서 재무자료를 추출하였으며,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빈도는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는 감사보고서 첨부서류인 “외부감사 실시내용” 중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자료를 수작업을 통해 파악하였다. 실증결과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제변수들의 1% 극단치(outliers)를 조정(winsorization)하였다.

8) 감사품질을 채량적 발생액으로 측정함에 따라 계수 값이 채량적 발생액과 유의한 음(-)의 관계는 감사품질과의 유의한 양(+)의 관계를 의미한다.

〈표 2〉 표본의 선정

구 분	표본수
2014년~2018년 비금융 상장회사(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중 12월 결산법인인 회사	10,690
자본잠식, 재무데이터가 없는 등 재량적 발생액을 구할 수 없는 경우	(1,345)
감사보고서상 외부감사실시내용에 커뮤니케이션 빈도 정보가 모호하거나 없는 경우	(1,820)
합 계	7,525

<표 3>은 최종 표본으로 선정된 기업들의 산업별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전체 표본 중에서 제조업이 5,099개로 전체 표본 중 67.7%를 차지하며,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이 839개로 11.2%, 도매 및 소매업이 640개로 8.5%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최초로 커뮤니케이션의 빈도를 공시하기 시작한 2014년이 1,317개로 가장 작으며, 점차 연도별 표본수가 증가하여 2018년은 1,678개로 나타났다.

〈표 3〉 표본의 산업별 분포

업 종	연 도					합 계	비율 (%)
	2014	2015	2016	2017	2018		
제조업	888	962	1,028	1,082	1,139	5,099	67.7%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9	9	9	9	10	46	0.6%
건설업	42	45	46	50	51	234	3.1%
도매 및 소매업	115	122	125	136	142	640	8.5%
운수업	12	13	13	13	13	64	0.9%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42	156	168	182	191	839	11.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84	89	97	98	104	472	6.3%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5	15	15	15	15	75	1.0%
기타 산업	10	9	11	13	13	56	0.7%
합 계	1,317	1,420	1,512	1,598	1,678	7,525	100.0%

IV. 실증분석결과

1. 기술통계량

독립변수, 종속변수, 통제변수에 대한 기술 통계량이 <표 4>에 제시하였다. 먼저, 수정존스모형에 따른 재량적 발생액(mjda1)의 평균(중위수)은 0.003(0), 성과통제모형에 따른 재량적 발생액(mjda1_roa)의 평균(중위수)은 -0.003(-0.007)로 나타났다. 외부감사인이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빈도의 평균은 2.529회이며, 중위수는 2로 표본기업은 약 2회 내지 3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통제변수를 살펴보면 기업규모(size)의 평균(중위수)은 25.973(25.724), 영업현금흐름(cfo)의 평균(중위수)은 0.045(0.044) 등으로 통제변수 모두 평균과 중위수 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외부감사인의 더미변수(big)의 평균은 0.497로 표본기업 중 약 49.7%가 외부감사인으로 Big4를 선임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4> 기술통계량

변 수	N	mean	sd	min	p25	p50	p75	max
mjda1	7525	0.003	0.102	-0.849	-0.04	0	0.041	1.511
mjda1_roa	7525	-0.003	0.082	-0.787	-0.042	-0.007	0.031	1.298
Comm	7525	2.529	1.179	1	2	2	3	30
size_w	7525	25.973	1.339	23.645	25.073	25.724	26.61	30.712
cfo_w	7525	0.045	0.093	-0.271	0	0.044	0.092	0.328
growth_w	7525	1.067	0.344	0.302	0.922	1.025	1.136	3.028
lev_w	7525	0.362	0.199	0.026	0.197	0.354	0.508	0.855
big	7525	0.497	0.5	0	0	0	1	1
loss	7525	0.27	0.444	0	0	0	1	1
own_w	7525	0.404	0.164	0.087	0.277	0.400	0.519	0.780
for_w	7525	0.070	0.102	0.000	0.010	0.026	0.084	0.511
ta_w	7525	-0.03	0.091	-0.401	-0.066	-0.023	0.011	0.249

-mjda1 : 수정 Jones모형을 이용한 재량적 발생액

-mjda1_roa : ROA 성과대응모형 (Kothari et al. 2005)을 이용한 재량적 발생액

-Comm : 해당기업의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감사실시내용 중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 빈도

-size : 총자산의 자연로그를 취한 값

-cfo : t기 영업현금흐름을 (t-1)기 자산총액으로 나눈 값

-growth : t기 매출액을 (t-1)기 매출액으로 나눈 값

- lev : 총부채를 총자산으로 나눈 값
- big4 : 해당회사 감사법인이 Big4(삼일, 안진, 삼정 및 한영)인 경우 1, 그렇지 않으면 0
- loss : (t-1)기 당기순이익이 음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 own : 최대주주 지분율의 자연로그값
- for : 외국인 지분율의 자연로그값
- ta : (t-1)기 총발생액을 기초 총자산으로 나눈 값

2. 상관관계 분석

<표 5>는 각 변수의 피어슨 상관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종속변수인 *mjda1*과 *mjda1_roa*는 매우 높은 양(+)의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종속변수인 *mjda1*과 *mjda1_roa*는 모두 커뮤니케이션 빈도(Comm)와 음(-)의 연관성을 보이고 있으나, *mjda1*에서만 유의한 음(-)의 연관성이 나타났다. 이는 커뮤니케이션 빈도가 많을수록 감사품질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mjda1*은 매출액성장률(*growth*), 최대주주지분율(*own*), 전기총발생액(*ta*)과는 유의한 양(+)의 관계를, 영업현금흐름(*cfo*), 부채비율(*lev*), 대형회계법인(*big*), 순손실(*loss*)과는 유의한 음(-)의 관계를 보였고, 나머지 변수와는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mjda1_roa*도 *mjda1*과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자산규모(*size*)와 외국인투자지분율(*for*)은 유의한 음(-)의 관계가 추가로 확인되었으며, 종속변수인 *mjda1*과 음(-)과 양(+)의 유의한 관계를 보였던 부채비율(*lev*)과 최대주주지분율(*own*)은 양(+)과 음(-)의 유의한 관계로 바뀌었다. 이러한 관계를 통해 기업규모, 성장률, 전년도 발생액이 높을수록 재량적 발생액은 증가하였으며 이와 반대로 외부감사인인 대형회계법인이고 순손실 기업인 경우와 영업현금흐름, 외국인투자지분율이 높을수록 재량적 발생액은 감소됨을 알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 빈도(Comm)는 자산규모(*size*), 부채비율(*lev*), 순손실(*loss*), 외국인투자지분율(*for*)과는 유의한 양(+)의 관계가 나타나 기업규모가 크고, 부채비율이 높고, 순손실이었고, 외국인투자지분율이 높을수록 외부감사인과 지배기구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영업현금흐름(*cfo*), 대형회계법인(*big*), 최대주주지분율(*own*)이 커뮤니케이션 빈도(Comm)와 유의한 음(-)의 관계로 나타남에 따라 영업현금흐름이 좋을수록, 최대주주지분율이 높을수록, 대형회계법인일수록 커뮤니케이션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상관관계 표

구 분	mjda1	mjda1_roa	Comm	size_w	cfo_w	growth_w	lev_w	big	loss	own_w	for_w	ta_w
mjda1	1											
mjda1_roa	0.8052***	1										
Comm	-0.0305***	-0.0092	1									
size_w	-0.0153	-0.0467***	0.1422***	1								
cfo_w	-0.3016***	-0.5633***	-0.0298***	0.1428***	1							
growth_w	0.0987***	0.0957***	-0.0093	-0.0208*	0.0870**	1						
lev_w	-0.1110**	0.0315**	0.0617***	0.1863***	-0.1367***	-0.0192*	1					
big	-0.0370**	-0.0595**	-0.1344***	0.4010**	0.1075**	-0.0032	0.0409***	1				
loss	-0.2465***	-0.0106	0.0408	-0.1833**	-0.4006***	-0.1319**	0.2193**	-0.0816**	1			
own_w	0.0485**	-0.0230*	-0.0478**	0.1549**	0.1429**	-0.0402*	-0.1078**	0.1617**	-0.2275**	1		
for_w	-0.0164	-0.0857***	0.0635**	0.4902***	0.2073**	0.0208*	-0.1103**	0.2504**	-0.1728**	-0.0669**	1	
ta_w	0.0631***	0.0143	-0.0106	0.0744**	0.0565***	0.0261**	-0.1319**	0.005	-0.1300**	0.1250***	0.0412***	1

1)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

2) 변수에 대한 설명은 <표 4>를 참조

3. 회귀분석 결과

가. 커뮤니케이션 빈도와 감사품질과의 관련성(가설1)

가설1를 검증하기 위하여 외부감사인과 지배기구의 커뮤니케이션 빈도와 감사품질과의 관련성을 검증하고자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표 6> 커뮤니케이션 빈도와 감사품질과의 관련성(가설1)

$$AQ = \alpha + \beta_1 \text{Comm} + \beta_2 \text{size} + \beta_3 \text{cfo} + \beta_4 \text{growth} + \beta_5 \text{lev} + \beta_6 \text{big4} + \beta_7 \text{loss} + \beta_8 \text{own} + \beta_9 \text{for} + \beta_{10} \text{ta} + \sum \text{산업더미} + \sum \text{연도더미} + \varepsilon$$

구 분	수정 Jones모형 (mjda1)	성과통제모형 (mjda1_roa)
Constant	-0.005 (-0.109)	-0.032 (-0.940)
Comm	-0.002*** (-2.664)	-0.001** (-2.185)
size_w	0.002* (1.656)	0.002** (2.418)
cfo_w	-0.550*** (-44.742)	-0.626*** (-70.211)
growth_w	0.027*** (9.003)	0.031*** (14.438)
lev_w	-0.041*** (-6.865)	0.001 (0.139)
big	-0.005** (-2.134)	-0.003* (-1.956)
loss	-0.093*** (-35.362)	-0.047*** (-24.683)
own_w	0.023*** (3.326)	0.013*** (2.608)
for_w	0.006 (0.452)	0.001 (0.129)
ta_w	0.031*** (2.772)	0.021** (2.533)
Observations	7,525	7,525
Year fixed effect	Yes	Yes
Ind fixed effect	Yes	Yes
Adj R-Squared	0.410	0.410
F	50.48***	92.65***

1)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

2) 변수에 대한 설명은 <표 4>를 참조

<표 6>의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주된 관심 변수인 커뮤니케이션 빈도(Comm)는 재량적 발생액과 모두 유의한 음(-)의 관계를 보였다. 이는 외부감사인과 지배기구간의 커뮤니케이션 빈도가 높을수록 감사품질이 향상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증거는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를 통해 감사품질 향상을 유도하는 감독당국의 입장이 지지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주요 통제 변수들을 살펴보면 자산규모(size), 매출액성장률(growth), 최대주주지분율(own), 전기총발생액(ta)는 모두 유의한 양(+)의 회귀계수를 보인 반면, 영업현금흐름(cfo), 부채비율(lev), 대형회계법인(big), 순손실(loss), 외국인투자지분율(for) 모두 유의한 음(-)의 회귀계수를 보였다.

이를 통해 기업규모가 클수록, 성장률이 높을수록, 대주주지분율이 높을수록, 전기총발생액이 많을수록 이익조정 수준이 높아지는 반면, 영업현금흐름이 높을수록,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손실기업일수록, 외국인투자지분율이 높을수록, 외부감사인이 대형회계법인인 경우 이익조정 수준이 낮아짐을 알 수 있다.

나. 커뮤니케이션 빈도와 감사품질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조절효과(가설2)

가설2를 검증한 결과는 <표 7>에서 보여주고 있다.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 빈도와 감사품질간의 관련성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것이다. 전체표본 7,525개의 약 22%에 해당하는 1,672개가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나머지 5,853개는 감사를 설치한 상장회사로 파악되었다.

패널 A는 전체표본에 대하여 실증한 결과이다. 가설1의 결과와 동일하게 커뮤니케이션의 빈도와 감사품질간의 유의한 양(+)의 관계가 확인되었으나, $Comm \times AC$ 의 계수 값이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해 가설2가 기각되어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기업이 그렇지 않는 기업에 비해 커뮤니케이션 빈도와 감사품질간의 관계를 강화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자발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자산총액이 2조원 미만인 그룹을 대상으로 가설2를 검증하였다. <표 7>의 패널 B는 추가적인 검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패널 B는 패널 A와 동일하게 커뮤니케이션의 빈도와 감사품질간의 유의한 양(+)의 관계가 확인되었고, $Comm \times AC$ 의 계수 값이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하여 감사위원회가 이들 관계를 강화한다는 가설2는 추가 실증분석에서도 기각되었다. 이러한 패널 A와 패널 B의 결과는 외부감사인과 커뮤니케이션 상대가 감사위원회일 경우 커뮤니케이션 빈도와 감사품질간의 관련성을 강화한다는 실증적인 결과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가설 설정 시 기대했던 것과 다른 결과를 얻음에 따라 후속 연구에서 감사위원회의 특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는 등 다른 접근방식을 통해 감사위원회가 두 변수 간 관련성을 강화하는지에 대하여 추가적인 실증연구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표 7〉 커뮤니케이션 빈도와 감사품질에 대한 감사위원회 조절효과(가설2)

$$AQ = \alpha + \beta_1 \text{Comm} + \beta_2 \text{AC} + \beta_3 \text{Comm} \times \text{AC} + \beta_4 \text{size} + \beta_5 \text{cfo} + \beta_6 \text{growth} + \beta_7 \text{lev} + \beta_8 \text{big4} \\ + \beta_9 \text{loss} + \beta_{10} \text{own} + \beta_{11} \text{for} + \beta_{12} \text{ta} + \sum \text{산업더미} + \sum \text{연도더미} + \varepsilon$$

구 분	패널 A		패널 B	
	수정 Jones모형 (mjda1)	성과통제모형 (mjda1_roa)	수정 Jones모형 (mjda1)	성과통제모형 (mjda1_roa)
Constant	-0.010 (-0.197)	-0.042 (-1.189)	-0.016 (-0.288)	-0.060 (-1.527)
Comm	-0.003*** (-2.672)	-0.002** (-2.152)	-0.003** (-2.513)	-0.002** (-2.076)
AC	-0.007 (-1.371)	-0.006 (-1.581)	-0.008 (-1.446)	-0.006 (-1.520)
Comm_AC	0.002 (1.112)	0.001 (0.903)	0.003 (1.356)	0.002 (1.150)
size_w	0.002* (1.744)	0.002*** (2.723)	0.002 (1.580)	0.003*** (2.871)
cfo_w	-0.550*** (-44.753)	-0.626*** (-70.226)	-0.554*** (-43.546)	-0.630*** (-68.416)
growth_w	0.027*** (8.978)	0.031*** (14.404)	0.027*** (8.685)	0.031*** (13.985)
lev_w	-0.041*** (-6.869)	0.000 (0.102)	-0.041*** (-6.501)	0.001 (0.111)
big	-0.005** (-2.155)	-0.003* (-1.904)	-0.004* (-1.787)	-0.003 (-1.618)
loss	-0.093*** (-35.363)	-0.047*** (-24.675)	-0.097*** (-34.678)	-0.049*** (-24.113)
own_w	0.024*** (3.359)	0.014*** (2.662)	0.025*** (3.322)	0.014*** (2.632)
for_w	0.006 (0.503)	0.002 (0.198)	0.002 (0.137)	-0.000 (-0.045)
ta_w	0.031*** (2.763)	0.021** (2.515)	0.031*** (2.685)	0.022** (2.547)
Observations	7,525	7,525	7,049	7,049
Year fixed effect	Yes	Yes	Yes	Yes
Ind fixed effect	Yes	Yes	Yes	Yes
Adj R-Squared	0.410	0.410	0.412	0.412
F	48.80***	89.57***	47.18***	86.19***

1)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

2) AC : 해당기업이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1, 그렇지 않는 경우 0

나머지 변수에 대한 설명은 <표 4>를 참조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외부감사인과 지배기구인 감사위원회(감사)간의 커뮤니케이션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하고자 하였다. 지배기구인 감사위원회(감사)는 효과적인 내부통제 및 높은 수준의 외부감사를 통해 양질의 재무보고가 가능하도록 감독하는 일을 담당하므로 외부감사인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고, 외부감사인도 감사위원회(감사)가 외부감사인 선임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최근 외부감사인과 감사위원회(감사)간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공시범위가 확대되고, 핵심감사제도가 쉐 상장사로 확대됨에 따라 감사위원회(감사)와 외부감사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은 하나의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감사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아주 중요하며 실질적인 절차가 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빈도가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감사품질의 대용치로 재량적 발생액을 사용하여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비금융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실증결과 첫째, 관심변수인 외부감사인과 지배기구간 커뮤니케이션 빈도의 계수 값이 감사품질과 유의한 양의 관계로 나타나 커뮤니케이션 빈도가 증가할수록 감사품질이 향상되는 결과를 얻었다. 둘째,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 빈도와 감사품질간의 관련성을 감사위원회가 강화하는지를 교차변수를 도입하여 검증한 결과, 교차변수인 $Comm \times AC$ 의 계수 값이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해 가설이 기각됨에 따라 외부감사인과 커뮤니케이션 상대가 감사위원회일 경우 커뮤니케이션 빈도와 감사품질간의 관련성을 강화한다는 결과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외부감사인과 지배기구인 감사위원회(감사)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대상으로 설문지나 인터뷰가 방식이 아닌 실제 커뮤니케이션 빈도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증 분석한 연구하라는 데 의의가 있다. 커뮤니케이션 빈도는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일 뿐 외부감사인과 지배기구인 감사위원회(감사)가 얼마나 심도 있게 회계이슈를 논의하였는지에 대한 질적인 요소를 고려하지 못한 결과이며, 감사품질의 대용치로 재량적 발생액만을 이용하였다는 한계점이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외부감사인과 지배기구간 커뮤니케이션이 많을수록 감사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실증적 결과를 제시함으로 감독당국이 외부감사인과 지배기구인 감사위원회(감사)간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고 공시 확대를 통해 투자자 등과도 공유되도록 정책을 뒷받침하는 실증분석 결과로 활용 가능하다는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참고문헌

- 고대영 · 김문태 · 윤순석. 2007. “감사위원회 도입과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 이익조정 통제에 미치는 영향”. 회계 · 세무와 감사 연구 제45호 : 69-90.
- 금융감독원. 2018. 신외감법 시행에 맞춰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보도자료).
- _____. 2019. 『알기 쉬운 新 외부감사법 가이드 북 : 기업 실무자와 新 외부감사법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서』
- 금융위원회. 2019. 회계개혁의 연착륙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보도자료).
- 김선미 · 유승원. 2010. “감사품질과 감사인 강제교체 및 자율교체”. 회계 · 세무와 감사연구 통권 51호 : 227-256.
- 맹수호 · 양동훈. 2015. “사외이사 집단의 전문성과 이익조정과의 관련성 : 금융업종을 중심으로”. 대한경영학회지 제28권 제4호 : 205-229.
- 손성규 · 최정호 · 이은철. 2004. “감사위원회의 효과 : 회계오류를 중심으로”. 회계학연구 제29권 제3호 : 61-90.
- 전규안 · 최종학 · 박종일. 2004. “감사위원회의 설치와 이익조정사이의 관계”. 회계학연구 제29권 제1호 : 143-171.
- 전영순 · 정준희 · 하승현. 2013. “감사위원회 재무전문가의 효과와 기업지배구조”. 회계학연구 제38권 제4호 : 31-60.
- 최 관 · 박종일. 2012. “계속감사기간과 감사품질에 관한 연구”. 세무와회계저널. 제13권 제3호 : 315-356.
- 최현섭 · 강내철 · 박상연. 2016. “감사위원회가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회계와 정책연구 제21권 제5호 : 71-93.
- _____. 정래용. 2017. “감사기구가 재량적 발생액에 미치는 영향”. 회계와 정책연구 제22권 제5호(통권 제65호) : 25-46.
- 한국공인회계사회. 2018. 회계감사 실무지침 2018-2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실무지침
- 한국기업지배구조원. 2018. 감사위원회(감사) 모범규준
- Beasley, M. S., Carcello, J. V., Hermanson, D. R. & Lapides, P.D. 2000, Fraudulent financial reporting : Consideration of industry traits and Corporate governance mechanisms, *Accounting Horizons*, Vol. 14, No. 4 : 441-454.
- Bedard, J., S. M. Chtourou and L. Courteau. 2004. The Effect of Audit Committee Expertise. Independence. and Activity on Aggressive Earnings Management. *A Journal of Practice and Theory* 23 (2) : 13-35.
- DeAngelo, L. 1981. Auditor Size and Auditor Quality.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3 (December) : 183-199.
- Dechow. P. M., R. G. Sloan and A. P. Sweeney. 1995. Detecting Earnings Management. *The*

Accounting Review 70 (2) : 193–225.

Krista Fiolleau, Kris Hoang, Bradley Pomeroy. 2019. Auditors' Communications with Audit Committees : The Influence of the Audit Committee's Oversight Approach, *Journal of practice & theory* Vol. 38, No. 2. : 125–150.

Read, W., and K. Raghunandan(2001), The State of Audit Committees, *Journal of Accountancy* 191(May) : 57–60.

Kothari. S. P., A. K. Leone. and C. E. Wasley. 2005. Performance matched discretionary accruals measure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39 (1) : 163–197.

Xie. B., W. N. Davidson III and P. DaDalt III. 2003. Earnings Management and Corporate Governance : The Roles of the Board and the Audit Committee. *Journal of Corporate Finance* 9 (3) : 295–316.

Relationship between Frequency of External Auditors' Communication with those Charged with Governance and Audit Quality

Jonggeun Kim* · Kap-Soon Kim**

〈Abstract〉

It is recently highlighted by the emphasis of regulators the importance of communications between external auditors and those charged with governance such as Audit committee or internal auditors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key audit matters to all listed companies. According to Auditing and Assurance Standards, external auditors are required to communicate with those charged with governance, and these Communications is one of the important audit procedures that can enhance audit quality. Therefore, as the frequency of communication was disclosed from 2014 to 2018,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whether frequency of auditors' communication with those charged with governance and Audit Quality are related. Audit Quality was measured using discretionary accruals.

The results show that there is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frequency of external auditors' communication with those charged with governance and Audit Quality. In addition, significant results were not obtained as a result of introducing cross variables to verify whether the Audit Committee strengthened the relationship between frequency of external auditors' communication with those charged with governance and Audit Quality. These results suggest that it is important to communicate external auditors with those charged with governance frequently. This study has limitations that takes into account communication frequency rather than the quality of the discussion on accounting issues, but suggest that the regulators' policy direction is a desirable direction for enhancing audit quality, such as emphasizing communication between external auditors and those charged with governance and expanding disclosure to be activated.

〈Key words〉 auditors' communication, Audit Quality, Audit committee

* Ph.D. Candidate, Department of Accounting, Dongguk University—Seoul, jjgkimfss@gmail.com, First Author

** Professor, Business School, Dongguk University—Seoul, kks@dongguk.edu, Corresponding Author